

7 · 8世紀 唐代 學校制度的 教育史的 意義

吳 富 尹*

目 次

| | |
|--------------|----------------|
| ◎. 序 論 | Ⅱ. 學禮의 完備 |
| I. 學制의 完備 | 1. 釋奠對象의 確定 |
| 1. 中央學制 | 2. 釋奠禮制의 確定 |
| 2. 地方學制 | 3. 釋奠禮의 教育的 意義 |
| 3. 卒業 以後의 進路 | ◎. 結 論 |

◎ 序 論

본고에서 말하는 「學校」(중앙·지방포함, 이하 같음)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주도하에 설치한 교육 기구를 두고 하는 말로써, 달리 「官學」이라고도 칭한다. 이러한 정의로 말한다면 중국의 학교 교육은 漢武帝 元朔 5年(B.C 124) 「博士弟子員」制를 설치, 「興太學」의 기초를 마련한 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¹⁾ 그 후 학교 교육은 중앙 집권 강화 및 관료제의 발달, 그리고 유교주의 정치 이념의 구현 등에 힘입어 관리를 양성해 내기 위한 「養士教育」을 강조 하면서 전제 왕권 확립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왔다는 얘긴데, 바로 이러한 점이 중국의 학교 교육이 지니는 특징이요, 선천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정치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흥쇠 여부 또한 결정되어 버리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唐 이전의 학교 교육은 漢·魏의 「太學」 단일 학제로부터 晉 惠帝 이후의 「國子·太學」兩學 竝立制로, 그리고 隋代에 이르러서는 소학 성질의 四門學이 대학 교육

* 濟州大 史學科 講師

1) 陳東原, 「中國教育史」, 臺北, 商務印書館, 1936. p. 2.

성질의 학관으로 탈바꿈 하면서 經學 3學館 체제를 갖추어 놓는 등 외형적 발전을 도모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실 있는 교육사적 발전 양상도 갖추어 놓고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이 점차 종교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國子祭主」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교육 행정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과거 經學 위주의 전통 교육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 괘시 받았던 書學·算學·律學 등 이른바 專業 敎育 학관을 최고 교육 기구의 직속 학관으로 예속시켜 놓으면서 경학 교육과 전업 교육 두가지 특징을 겸비하는 교육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學禮」의 실시를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했던 「學校敎育 理想」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심어 주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唐制(國子監制, 이하 같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隋制(國子寺·學制,²⁾ 이하같음)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자 두가지의 특징은 隋文帝 開皇 國子寺(學)制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도 隋文帝的 「權學行禮」 조서³⁾에서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隋는 이러한 특징이 구비되기도 전에 618년 불과 30년의 단기 왕조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으므로, 전통 중국 학교 제도 완비는 다음 왕조인 唐의 學制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華夏 民族에 의한 중국의 진정한 통일 왕조라 할 수 있는 唐의 學校 制度(學制·學禮포함, 이하 같음)는 隋制를 모체로 삼으면서도, 나아가서는 漢 이래 발전해 온 중국 학교 제도를 집대성, 전통 학교 제도의 특징을 완비해 놓고 있다.⁴⁾ 시기적으로 말하면 7,8세기, 특히 「貞觀之治」와 「開元之治」로 대표되는 盛唐時期에 이러한 특징은 모두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755년 「安史之亂」 이후로는 번진 세력의 할거에 따른 중앙 집권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은 점차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교육의 중심도 官學 체제에서 「私家講學」의 私學 체제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宋 이후의 학교 교육은 뚜렷한 발전없이 다만 唐代 완비된 학

2) 「隋書」卷 28 百官下.

3) 「隋書」卷 47 柳昂傳.

4) 籃文徵, 「隋唐五代史」, 臺北, 商務印書館, 1981, p. 1. 高明士, 「唐代學制之淵源及其演變」, 國立臺灣大學歷史學報, 4, 1977.

교 제도의 토대 위에서 수정 발전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중국 교육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 唐代 교육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중요함에 비추어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논급은 대단히 많다. ” 그런데 종래 학자들의 논급은 주로 학제 한 방면에 치중해 버리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의 「養士」的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학교 교육의 전모, 특히 「教育理想」의 내재를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성을 드러내 버리고 있다. 唐代 학교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완비된 학제와 학제를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는 「儒敎主義敎育」⁵⁾ 시책에 일치시킴으로써, 동양 특유의 학교 제도라 할 수 있는 「廟學制」⁶⁾를 창출해 냈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學禮(釋奠禮를 대표로 들 수 있음)의 적극적인 발전 노력은 唐代 교육사가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므로 본고는 이 점에 유의하여 다루고자 한다.

唐代 학교 제도에 관한 가장 이상적인 서술은 學制와 學禮, 그리고 科擧制度 3者を 함께 놓고 그 인재 양성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겠지만 과거 제도의 경우는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난후 학생들의 入仕標準, 즉 관리로의 진출을 위한 전형에 관계된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 분리하여 언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學制와 學禮를 결부시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唐代 학교 제도의 특징을 교육사적 측면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⁸⁾ 서술상의 서투른 논리 전개나 기존 학자들의 논술과 색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叱正을 바란다.

5) 陳東原, 「中國敎育史」(앞의 책); 陳青之, 「中國敎育史」(臺灣, 商務印書館, 1978 臺 8 版) 高明士, 「唐代東亞敎育圈的形成」(臺灣, 國立編譯館, 1984) 및 多賀秋五郎, 「唐代敎育史の研究」(東京, 不昧堂, 昭和28年)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6) 高明士, 앞의 책, pp.227~232.

7) 高明士, 「羅·麗時代廟學制的創立與其展開」(「大東文化研究」, 23, 成均館大學校, 1989) 및 同氏, 앞의 책, pp.188~226 참조.

8) 唐代 科擧制度에 관해서 鄧嗣禹, 「中國考試制度史」(臺北, 學生書局, 1967) 및 高明士, 「隋唐貢擧制度對日本·新羅的影響」(林天尉·黃約瑟主編, 「古代中韓日關係研究」(Hong Kong, Centre of Asian Studies, Univ. Of Hong Kong, 1987), 柳海峰, 「唐代敎育與選舉制度綜論」(臺北, 文津出版社, 1991) 등에 상세하다.

I. 學制의 完備

7.8세기 唐의 學制(중앙, 지방 포함)는 가까이는 隋代 開皇 및 大業 학제를 멀리
는 西晉 및 (北)魏·(北)齊 학제를 계승한 중국 전통 학교 제도의 결정체로서 교육
행정 체제로부터 학관조직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입학 및 교학 내용, 시험 제도 등
에 관한 것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學令」으로 정해 놓고 있다.⁹⁾ 따라서 이 시기의 학
제는 전통 중국 학교 제도의 특징을 총 망라하여 이를 완비해 놓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구나 완비된 이후의 학제는 宋 이후 중국 교육사의 전개 과정에, 그
리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제국에까지 영향을 끼쳐, 한국이나 일본의 고대 학교 제도
는 대부분 이러한 唐의 제도를 전본으로 삼고있다.¹⁰⁾ 따라서 전통 중국 학제의 특징
및 주변 제국의 학교 출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唐代 학제의 완비 과정 및 그
특징 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중앙과 지방 두가지 학제로 나누어 살펴보겠
다.

1. 中央 學制

7.8세기 唐의 중앙 학제는 직계 및 방계 두개의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계
학관이란 「國子監」 직속의 國子學 이하 6개 학관을, 방계 학관이란 국자감 직속은
아니지만 그 교육 조직이나 시험 및 등용 규정이 국자감 직속 학관에 따라 시행되는
학관을 두고하는 말이다. 이러한 구분은 唐제의 모체라 할 수 있는 隋代 國子寺制¹¹⁾
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唐制처럼 뚜렷하지는 않다. 먼저 직계 학관부터 설명하
겠다.

「唐六典」卷 21 「國子監」條에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

9) 高明士, 앞의 「唐代學制之淵源及其演變」, p.217. 「學令」이나 「選舉令」은 西晉 泰始4
年(268) 「泰始律令」이 반포된 후 정식 편목이 된 것으로, 이는 漢初 「功令」에서 기원
한다는 說이 있다. 堀敏一, 「中國律令法の展開」(「中國律令制の展開とその國家・社會
との關係」, 東京, 唐代史研究會, 1984), pp.5~20.

10) 高明士, 앞의 「唐代東亞教育圈의形成」 참조.

11) 「隋書」卷 28 百官下.

國子祭主·司業之職，掌邦國儒學訓導之政令。有六學焉，一曰國子，
二曰太學，三曰四門，四曰律學，五曰書學，六曰算學。

즉 唐代「國子監」¹²⁾은 전국 최고의 교육 행정 기구로써, 문교장관인「國子祭主」(1인·종3품)와 차관인「司業」(2인·종4품하)을 두어「국내 유학 및 훈도에 관한 政令」을 관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 교육 행정 기구는 隋代 國子寺制에서 처음 출현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하여도 교육은 종교 및 의례를 관장하는「太常寺」에 예속되어 있었다.¹³⁾ 그러던 것을 隋文帝는 開皇 13年(593)「國子寺」를「國子學」으로 개칭하면서 학교 교육을 太常寺의 관할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수립해 놓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國子·太學·四門·書·算學 등 5學을 그 직속 학관으로 배치해 놓았다.¹⁴⁾ 이러한 사실에 대해 杜佑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凡國學諸館，自漢以下竝屬太常，至隋始革之。¹⁵⁾

실로 隋代 國子學制의 출현은 漢 이래 발전해 온 중국 교육사의 일대 획기적인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煬帝는 大業 3年(607)에 이르러 司業(종4품·1인)과 丞(종6품·3인)을 각각 증 하면서「國子學」을「國子監」으로 개칭,¹⁶⁾ 唐太宗 國子監制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唐代 國子監制는 太宗 貞觀 2年(628)에 출현한 것으로, 國子學 이하 6學을 직속 학관으로 예속시켜 놓고 있다. 그 6學 규모는 隋代 國子寺(學)·監制의 5學 토대위에 唐代「律學」이 새로 첨가되어 완성된 것으로 高祖 武德「國子學」制¹⁷⁾에서 이러한 규모는 처음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나 실시 여부는 상세히 전하는 사료가 없어 알 수 없다. 그런데 高祖는 그 6學 규모를 완성한 후 얼마없어 書·算·律

12. 唐代 國子監 명칭은 太宗 貞觀2年(628)에야 출현한 것으로, 그 후 改名이 잦았다. 「新唐書」卷 48 「國子監」條注 참조.

13) 「通典」卷 27 職官典 「國子監」條.

14) 「隋書」卷 28 百官下.

15) 앞의 註12와 동일.

16) 「隋書」卷 28 百官下.

17) 「新唐書」卷 48 百官3 「國子監」條.

學 등 이른바 專業 敎育 학관에 대해 폐학 조치를 단행해 버리고 말았다.¹⁸⁾ 그 이유도 사서에는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다. 太宗은 貞觀 2年(628) 國子監으로 개칭하면서 書·算學 2개 학관을 먼저 復置 하였고¹⁹⁾, 4년 후 貞觀 6年(632)에 가서는 律學까지 복치하여²⁰⁾, 6學 규모는 다시 한번 갖추어지게 되었다. 唐代「國子監」6學 규모는 사실 太宗 貞觀 6年(632) 이후에야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玄宗 天寶 9載(750) 국자감생들의 進士科 준비를 위해 설치해 놓은 「廣文館」까지 합하여 國子監 「7學」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²¹⁾

이들 학관의 연원 및 唐代 상세한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언급이 많으므로 재차 설명하지 않겠다.²²⁾ 대신 본고에서는 唐代 國子監 6學(7學) 규모의 완성이 지니는 교육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漢武帝 元朔 5年(B.C 124) 중국 관학 교육이 처음 출현한 이래 儒學 敎育(經學 敎育)과 專業 敎育(技術學 敎育)은 각기 성질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유학 교육은 처음부터 사회적 중시를 받으면서 세인들에게 인기있는 학문이었지만, 전업 교육은 출현 시기는 자못 빨랐어도²³⁾ 사회적 냉대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쉽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데 隋文帝 開皇 國子寺制가 출현한 이후 전업 교육의 발전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즉, 이때부터 전업 교육 학관도 최고 교육 기구의 직속 학관으로 예속시켜 놓으면서 과거 경학 위주의 전통 교육 성질로부터 탈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隋文帝 당시의 상세한 교육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괘시받았던 전업 교육이 유학 교육과 더불어 최고 교육 기구내에 공존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중국 교육사 발전의 일대 획기적인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은 唐 태종 국자감제에 이르러 律學이 첨가되면서 더욱 분명해 졌다. 즉, 「唐六典」 「國子監」條 6學制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태종 시대 국자감제에서는 유학 교육(국자

18) 앞의 註17과 동일

19) 「新唐書」卷 48 百官3 「國子監」條, 「舊唐書」卷 189上 「儒學傳」序.

20) 「律學」의 復置時期에 대해서는 貞觀 6年을 「初置」(「舊唐書」卷 3, 太宗本紀)로 보는 경우와, 「復置」(「新唐書」卷 48 百官3) 보는 說이 양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多賀氏의 고증을 따른 것이다. 앞의 책, p. 23.

21) 「新唐書」卷 48 百官3 「國子監」條의 說을 대표로 들 수 있다.

22) 高明士氏의 위 「唐代學制之淵源及其演變」이 상세하다.

23) 書·算學은 古代 六藝의 書·數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多賀氏, 앞의 책, p. 20.

학·태학·사문학)과 전업 교육(율학·서학·산학)을 3:3 동등한 비율로 배정해 놓고 있어 제도상의 의미대로라면 전업 교육도 유학 교육 못지 않게 정부에서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高宗은 顯慶 3年(658) 9月 이들 전업 교육 학관들이 「事唯小道, 多擅專門, 有乘故實」이라는 이유로 高祖 武德 이후 두번째 폐학 조치를 단행하고 말았다.²⁴⁾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吏材를 양성해 내는 교육과 기능인을 양성해 내는 교육은 결코 겸행 할 수 없다는 고종 자신의 편견된 교육 정책이요, 잔뜩이나 발전의 호기를 장악한 전업 교육에 대해 일대 쇠기를 박은 퇴보적 조치일 뿐이다. 唐代 교육 정책에 있어 고종과 그 이전 고조 자신이 태종이나 훗날의 현종과 대비되는 점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후 4년이 지난 龍朔 2年(662)에 이르러 이들 학관은 모두 회복되었지만,²⁵⁾ 이듬해(663)에 가서 書學은 隸蘭臺(원래 명칭은 秘書省), 算學은 秘書閣局(太史局), 律學은 詳刑史(大理寺)로 각각 분속시켜 버림으로써 전업 교육의 약화를 부추기고 말았다. 玄宗 開元年間(713~741)의 제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唐六典」國子監條에 다시 이들 3學을 그 직속 학관으로 서술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후 다시 회복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德宗 때 太子校書郎 李觀曾은 「請修太學書」상서문 가운데 「在昔, 學有六館, …… 今存者三, 亡者三.」이라 하여, 서·산·율학 3學을 「亡者學館」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현종 개원 말기 이후의 전업 교육은 유명 무실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 교육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 같다.

정리하면 「國子祭主」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교육 행정 체제의 수립이나 최고 교육 기구에 유학 교육과 전업 교육을 겸비해 놓고 있는 전통 중국 학교 제도의 특징은 隋文帝 國子寺(學)制에서 처음 마련되어 唐 태종 국자감 6학제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 졌다. 이러한 특징은 宋 이후 明·清 학제에까지도 변함 없었으며 특히 唐의 학제를 받아들여 자국내 학교 제도를 수립한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지역의 학교 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唐會要」卷 66 「廣文館」條. 여기에 律學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舊唐書」卷 4 高宗本紀의 내용을 토대로 보충하였다.

25) 「新唐書」卷 48 百官3 「國子監」條.

방계 학관이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자감 직속은 아니지만 그 교육 성격이나 조직이 국자감 직속 6學에 가까운 교육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는 것으로는 「弘文·崇文」兩館 및 「醫學」, 그리고 玄宗때 설치한 「崇玄館」 등을 들 수 있다. 유독 이들 학관만을 방계 학관으로 삼는 이유는 그 「考試·登用, 如國子(監)之法」하기 때문이다.²⁶⁾ 나머지 몇몇 학관도 외형상 보기에는 교학 형식을 구비해 놓은 것 같지만, 그 교육 방식이나 升遷規定은 「徒師制」 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관학이나 국자감 방계 학관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弘文館」은 門下省에 예속되어 있다. 이는 後漢時代의 東觀 魏의 崇門館 宋 元嘉 時期의 「玄·史」兩館 등의 성질을 계승한 것으로 唐代에는 「或典校理, 或史撰著, 或兼訓生徒」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⁷⁾ 이 학관의 「兼訓生徒」 즉, 교학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太宗 貞觀 元年(627) 京官 直事 5品官 이상의 자제들 가운데 嗜書者 24人을 선정, 書法과 經·史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면서부터이다.²⁸⁾ 그 후 講經博士가 설치되면서 정식 교육 기구로 발전해 나갔으며 나아가서는 중앙 최고의 귀족 자제들만 입학하는 귀족 학교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 교육은 왕족 및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소학 및 대학 교육을 병행하였을 것 같다.

「崇文館」은 太宗 貞觀 13年(639)에 설치하여, 東宮에 예속시켜 놓았다. 처음에는 「崇玄館」 또는 「太子學館」이라 불렀다. 이 학관의 교육 사업은 高宗 顯慶 元年(656) 皇太子 弘의 요청으로 學士를 설치, 生徒 20員을 두면서부터 시작되었다. 弘文館 교육에 비하면 약 30년가량 늦다. 高宗 上元 2年(675)에 가서는 章懷太子의 諱를 피해 崇文館이라 개칭하였다.²⁹⁾ 그 교육은 弘文館과는 달리 대학 한가지 교육만 실시하였다.

醫學 敎育은 「諸醫療之法」을 관장하는 太醫署 太醫令 관할하에 醫·針·按摩·呪禁 등 4개科를 설치해 놓고 있다.³⁰⁾ 이 가운데 呪禁科 하나만 唐 武德 학제에 이르러 처음 설치 되었을뿐, 나머지 3개科는 隋制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다. 唐代 이처

26) 「唐六典」 卷 8·26·14.

27) 「唐六典」 卷 8 「弘文館學士」條.

28) 앞의 주와 동일.

29) 「新唐書」 卷 49上 百官志.

30) 「唐六典」 卷 14 「太醫署」條.

럼 학과를 증설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학 교육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다.

「崇玄館」의 교육 사업은 玄宗 開元 年間 兩京 및 諸州의 玄元皇帝廟에 崇文館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정확한 연대는 사서마다 출입이 있어 단정하기 힘들지만³¹⁾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開元 29年(741)說이 비교적 유력할 것 같다.³²⁾ 더구나 玄宗은 天寶 元年(742)했으며 兩京 崇玄學에 博士·助教 각 1人, 그리고 학생 100人을 설치 하도록 詔했으며, 그 이듬 해(743)에 가서는 崇玄學의 지위를 중앙 최고의 귀족 학교인 鴻文·송문 양관에 비견할 목적에서 「崇玄學」을 「崇玄館」, 博士를 學士, 助教를 直學士로 각각 개칭함과 동시에 大學士 1人을 더 두고서는 재상이 그 교육을 총괄하도록 하였다.³³⁾

이상 서술한 국자감 직·방계학관의 학관 편제, 입학 규정, 교학 과정, 그리고 교재 등에 관해서는 「唐六典」(卷 8·14·21), 「舊唐書」(卷 9·24·43·44), 「新唐書」(卷44·48·49), 「唐會要」(卷35·48·64·66·77) 등에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출입이 심하다. 본고는 주로 현종 개원년간의 제도에 착안하여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2. 地方學制

唐 이전 지방 관학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하는 사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 隋文帝는 北周·北齊 제도를 계승하여 郡·縣에 학교를 설치해 놓았으나³⁴⁾ 仁壽 元年(601)에 내린 그 유명한 「廢學詔書」³⁵⁾로 말미암아 이를 모두 폐지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煬帝가 즉위하면서 다시 회복되었지만 역시 전하는 사료

31) 開元 10年說··「冊府元龜」(卷53), 20年說··「舊唐書」(卷24), 25年說··「新唐書」(卷48), 29年說··「通典」(卷 15)·「舊唐書」(卷9)·「新唐書」(卷44)·「唐會要」(卷 64·77).

32) 多賀氏, 앞의 책, pp.216~218. 高明士, 앞의 글, p.214.

33) 「舊唐書」卷 9 「玄宗本紀」下, 「新唐書」卷 44 「選舉志」.

34) 「隋書」卷 75 「儒林傳」序.

35) 「隋書」卷 2 「高祖本紀」.

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³⁶⁾

唐代 지방 관학의 설치 노력은 고조때부터 적극 실시되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중앙의 국가감제처럼 隋制를 직접 계승하지 않았을 것 같다. 고조는 무덕 원년(618) 5월 다음과 같이 지방 관학 설치를 詔令하였다.

上郡學置生六十員，中郡五十員，下郡四十員；上縣學並四十員，中縣三十員，下縣二十員.³⁷⁾

즉, 군·현을 상·중·하로 3분 해 놓고 있는 점이나 군·현의 크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생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점 등은 北魏 말기의 제도와 비슷하다.³⁸⁾ 이러한 제도는 훗날 지방 관학 설치를 독려하는 군주들의 건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武德 7年(624) 2월에 가서는 「州縣及鄉里，並令置學」의 조서까지 내리고 있어³⁹⁾ 제도상의 의미대로 얘기한다면 唐代 지방 관학은 고조때 이미 각 주·현 및 심지어 일부 향리에까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 역시 그랬었는지, 이는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방 관학 설치의 중앙 집권적 지방 행정 체제의 완성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아직 천하가 평정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하에서 주·현 및 향리에까지 학교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唐代 정국이 안정되고 지방 통치 체제가 완성되기 시작한 것은 「玄武門」 정변을 거쳐 왕위에 오른 太宗 李世民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태종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次子로써 왕위에 등극하여 뒤 국내 문물 정비 및 정치 안정에 주력한 결과 「貞觀之治」라 불리는 盛世를 창출해 냈다. 때문에 고조때 내린 위와 같은 지방 관학의 설치 조서가 당시에 철저히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라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실시 가능

36) 「隋書」卷 28 「百官志」.

37) 「舊唐書」卷 189上 「儒林傳」序.

38) 北魏 지방 관학의 설치 시기는 3期로 구분할 수 있다. 제3기에 군·현을 대증소로 3분하여 학관과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陳道生, 「北魏郡國學綜考」(「大陸雜誌」, 30卷 10期, 1965. 12月) 참조.

39) 「唐大詔令集」卷 105 「置學官備釋奠禮條」에서 인용. 「通典」(卷 53 禮典)이나, 「舊唐書」(卷 34 禮儀志), 「新唐書」(卷 44 選舉志), 「冊府元龜」(卷 50 崇儒術)등에서는 「州縣及鄉，並(혹은 各)令置學」이라고만 하고 있다.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태종 재임시기 지방 관학의 발전 상황에 관해서도 사서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貞觀 3年(629) 9월에 내린 「諸州亦置醫學」의 조서나⁴⁰⁾ 貞觀 4年(630)의 「全國州縣官學建置孔廟」란 조서⁴¹⁾에 근거해 보면 적어도 이때 지방의 주·현까지는 학교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玄宗은 開元 26年(738) 5월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조서를 내리고 있다.

天下州縣，每鄉之內，各里置一學。⁴²⁾

이 조서를 앞서 太宗 貞觀 4年(630)에 내린 조서와 연관시켜 보면 이는 태종 재위기간 각 지방에 보편적으로 설치해 놓은 州·縣學의 토대위에 나아가서는 鄉·里 등 지방의 최말단 조직에까지 학교 설치를 독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당시 이러한 조서가 철저히 시행되었다면 중국의 지방 관학은 이에 이르러 「一里一學」제가 마련되었을 것이며, 漢 이래 지방 학교의 설치 노력도 결실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安史之亂 이후로는 번진의 발호에 따라 정국이 불안하고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 체제 또한 나약해져 버림으로써 중앙은 물론 지방 학교 교육은 쇠퇴해져 버리고 말았다. 「學堂蕪穢，略無人踪；詩·書·禮·樂，罕聞學者。」⁴³⁾라든가, 「郡邑，……雖設博士弟子，或役於有司，名存實亡，失其所業。」⁴⁴⁾ 등이 당시 폐학지경에 이른 교육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를 보면 지방 학교 교육도 중앙 학교 못지 않게 정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7, 8세기 安史之亂 이전 시기를 唐代 학제의 완비 시기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 학교의 교육은 태종 이전까지만 해도 漢 이래의 전통을 이어받아 經學위주의 敎育만 실시하였으나, 太宗 貞觀 3年(629) 醫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조서⁴⁵⁾가 내

40) 「舊唐書」卷 2 「太宗本紀」.

41) 「舊唐書」卷 15 「禮樂志」.

42) 「唐會要」卷 35 「學校」條.

43) 「冊府元龜」卷 604 「學校部彙議」.

44) 「韓昌黎文集」卷 7.

45) 「舊唐書」卷 2 「太宗本紀」.

려진 이후로는 지방 관학(단, 州學 까지에만 한정)에서도 경학과 의학이 양립하는 교육 내용을 갖추어 놓게 되었다. 그후 玄宗 開元 말에 가서는 崇玄學까지 설치⁴⁶⁾ 함으로써, 지방 관학의 교육 내용은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경학 교육의 위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3. 卒業 以後의 進路

A. 地方 官學 學生

사료의 한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지방 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주로 관리나 평민의 자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玄宗은 開元 21年(733) 5月 「許百姓任立私學, 欲其寄州縣受業者, 亦聽.」⁴⁷⁾이라는 조칙까지 내려 수많은 평민 자제들이 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그 입학 조건은 중앙 관학에 비해 까다롭지는 않았을 것임이 시험 규정 역시 중앙 관학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서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연말에 치르는 「歲考」가 있었고 이는 해당 州에서 알아서 관장 하도록 하였다.⁴⁸⁾ 그리고 졸업은 「通一經」 이상이면 가능하였을 것 같다.⁴⁹⁾

졸업후 이들의 진로는 계속 중앙 학관에 입학하여 학업을 연장 하든지, 아니면 직접 貢舉에 참여하는 두가지 길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玄宗 開元 21年(733) 5月 이후에야 가능했으며 이 때부터 지방 관학생 가운데 「上進深造者」의 경우는 중앙 四門學의 「俊士生」으로 입학하여 학업을 연장할 수 있었고 개인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는 최고 학부인 국자학에까지 升學할 수 있게 되었다.⁵⁰⁾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25세 이하의 8품 자제이거나 21세 이하 서민 자제 가운데 「通一經」 이상인 者에 한했다. 하지만 반드시 通經하지 못한 者라 할지라도 「文辭史學」에 뛰어나거나 심지어 공거에 불합격한 者까지 그 입학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⁵¹⁾ 이와 같은 규정이 꼭 지켜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졸업과 동시 貢舉에 참여하려는

46) 「新唐書」卷 44 「選舉志」.

47) 「唐會要」卷 35 「學校」條.

48) 「新唐書」卷 44 「選舉志」 및 「唐會要」卷 35 「學校」條.

49) 陳青之, 앞의 「中國教育史」, p. 186.

50) 「新唐書」卷 44 「選舉志」.

51) 「新唐書」卷 44 「選舉志」, 「唐會要」卷 35 「學校」條, 「文獻通考」卷 41 「學校考」.

者의 경우는 매년 仲冬(11월) 해당 주현에서 점검을 끝낸 후 참가하면 된다.

B. 中央官學學生

중앙 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주로 貴族이나 朝官子弟, 그리고 평민 자제 가운데 우수한 者라야 한다. 귀족이나 조관 자제들의 경우는 번잡한 수속없이 가문의 품계나 연령이 해당 학관의 입학 조건에 합당하기만 하면 가능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上進深造」하려는 者의 경우는 반드시 사문학 준사생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졸업 규정은 경학과 학생의 경우 반드시 「通二經」이상 이어야 하며⁵²⁾ 졸업 후의 진로는 역시 두 가지, 학관에 계속 남아 학습을 진행하려 하는 者에 대해, 사문학 졸업생은 태학, 태학 졸업생은 국자학으로 승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通二經」 이상의 者로써 직접 공거에 참여하려 할 경우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禮部(開元 24年 이후 공거 관할청은 吏部에서 禮部로 바뀜)에 통보한 후 省試에 참가하면 되었다. 한편, 중앙 경학과 학생은 군주의 「制舉」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외, 서·산·율학 등 전업 교육 학관생의 경우도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 고시를 치뤄야만 한다.

방계 학관 가운데 弘文·崇文館 및 醫學 4개과 그리고 崇玄館을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考試·登用, 如國子(監)之法」⁵³⁾이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시험 및 등용 규정은 국자감 경학과 규정에 준했을 것 같다.

한편 高宗 上元 2年(675)에 가서는 국내 경학 연구 풍토 조성 및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吏部 貢舉 及第者 가운데 「聰明者」 20人을 선발, 다시 9년간의 경학 연구에만 전념케 하는 이른바 「國子監大成制」라는 것도 있었다.⁵⁴⁾ 이들은 散官으로 임명되었고 녹봉까지 지급되었으며 9년 이내 吏部에서 규정한 「通四經」 이상일 경우에는 품계까지 특진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공거 급제자들이기 때문에 관인 신분의 학생이었지, 순수한 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통틀어 말해 학관에 계속 남아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려는 자이건, 아니면 졸

52) 唐代 通經 規定은 「新唐書」(卷44 選舉志), 「唐六典」(卷 2·4)에 상세히 보인다.

53) 「唐六典」 卷 8, 14, 26.

54) 「新唐書」(卷44 選舉志), 「唐六典」(卷 21 國子監條) 및 「選舉志」(卷44 職官志)에 이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업과 동시에 공거에 참가하려는 자이건 간에 그들의 최종 목표는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관학 교육은 漢代 그 교육이 처음 실시될 때부터 관리 양성을 위한 「養士教育」에 치중하였던 것이며, 貢舉 制度는 한낱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에 불가하였을 뿐이다.

II. 學禮의 完備

본고에서 말하는 「學禮」란 학교내에서 거행하는 儀禮를 두고 하는 말이다. 漢武帝 「興太學」 이후, 중국의 학교(중앙·지방 포함, 이하 같음)에서는 일상의 課業의에도 天子의 視學이나 養老·釋奠·鄉飲酒禮 등 각종 의례를 중요시해 왔다.⁵⁵⁾ 隋文帝 開皇 3年(583) 4월에 내린 다음과 같은 「權學行禮」의 조서가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建國重道，莫善於學，尊主庇民，莫善於禮，……治國之身，非禮不可，
……若教以學業，權以經禮，自可家慕大道，人希至德。⁵⁶⁾

즉, 학교 교육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權學」과 「行禮」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역설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례를 거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위 조서의 내용처럼 「自可家慕大道，人希至德」을 기대하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교육사를 다루어온 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 가운데 이처럼 學禮의 숭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소홀히 해 버리고 있다.

唐代 학례도 학계와 마찬가지로 北齊 및 隋의 제도를 계승하여 釋奠·養老·鄉飲酒禮 등 3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그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오직 釋奠禮 하나만 집중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釋奠禮 唐代 학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⁵⁷⁾ 따라서 본고는 이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釋奠禮는 「禮記」文王世子篇의 . .

55) 「通典」卷 2 「禮典」에 인용된 「決疑」.

56) 「隋書」卷 47 「柳昂傳」.

57) 高明士, 앞의 책, pp. 209~211, 表4 「隋唐中央官學의 學禮」 참조.

凡始立學者，必釋奠於先聖·先師。

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先聖·先師」에 대해 거행하는 제례를 두고 하는 말이다. 漢·魏까지만 해도 그 禮는 周制를 모방하여 學校(太學)가 아닌 「辟雍」에서 다른 禮와 함께 거행하였다. 그 후 西晉 武帝 咸寧 2年(276)에 이르러서는 「國子學」이, 그리고 東晉에 이르러서는 「孔子廟」까지 건립되면서⁵⁸ 오직 釋奠禮 하나만을 학교내에서 거행하는 제사로 규정해 놓았다.⁵⁹ 그 후 역대 군주들도 이 釋奠禮만을 중심으로 학례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東晉이후 최고 학부에 공자묘를 건립, 그곳에 聖賢들을 봉안하여 釋奠禮를 거행하는 전통은 南北朝를 거쳐 隋·唐時代에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갔다. 특히 唐代에 이르러서는 지방 관학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어갔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실시한 여러가지 제례 가운데 그 교육적 의의를 가장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오직 釋奠禮 하나뿐이며, 그 교육적 의의가 가장 찬란히 빛났던 시기 역시 唐代라 할 수 있다.⁶⁰

1. 釋奠 對象의 確定

釋奠 對象이란 「禮記」에서 말하는 「先聖先師」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禮記」에서 조차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漢魏以來，取捨各異，顏回·孔子，互作先師，宜父·周公迭爲先聖。」⁶¹ 하는 혼란을 초래케 해 버렸다. 後漢 明帝 永平 2年(59)에는 周公을 先聖, 孔子를 先師로 각각 규정하였다.⁶² 그 후 曹魏 濟王芳 正始 7年(246) 12월에 이르러서는 孔子를 先聖, 顏回를 先師로 개정한 것이 西晉 및 南北朝·隋代까지 통용되었다.⁶³ 그런데 唐代에 이르러 先聖制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58) 「晉書」卷 3 武帝本紀, 「宋書」卷 14 禮志.

59) 「太平御覽」卷 535 「庠序」條에 인용한 「尚書大事」에 보임. 高明士, 앞의 책, pp. 211~212 참조.

60) 高明士, 앞의 책, pp. 177~188.

61) 「唐會要」卷 35 「褒崇先聖」條.

62) 「後漢書」禮儀志.

63) 「唐會要」卷 35 「褒崇先聖」條, 「新唐書」卷 15 「禮樂志」.

高祖는 武德 2年(619) 6月 「於國子學立周公·孔子廟各一所, 四時致制」란 조서를 내리면서 이전 시대에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周·孔二聖制」를 채택하였다.⁶⁴⁾ 그가 왜 이러한 독특한 제도를 취해야만 했는지 사서에서는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런데 武德 7年(624) 2월에 가서는 國子學에 친림하여 석전례를 거행하면서 종전의 「二聖制」를 취소해 버리고 이번에는 周公을 先聖, 孔子를 先師로 삼도록 하는 이른바 「聖周師孔」制를 채택하였다.⁶⁵⁾

太宗은 貞觀 2年(628) 12月 이전 高祖 때의 「聖周師孔」制를 폐지하면서 다시 曹魏 이래 西晉 및 南北朝·隋代까지 통용되었던 「聖孔師顏」制를 채택하였다. 이는 당시 尚書左僕射 房玄齡과 國子博士 朱子奢의 奏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이 上秦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武德中, 詔釋奠於太學, 以周公爲先聖, 孔子配享. 臣以周公·尼父, 俱稱聖人, 庠序置奠, 本緣夫子, 敬晉, 宋, 梁, 陳及隋大業故事, 皆以孔子爲先聖, 顏回爲先師. 歷代所行, 古人通允. 伏請停祭周公, 升夫子爲先聖, 以顏回配享.

그러자 太宗은 이를 허락하였다.⁶⁶⁾ 당시 太宗이 이를 허락한 이유는 첫째, 상주문의 내용처럼 「庠序置奠, 本緣父子」라는 사실이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聖孔師顏」制는 西晉 이래 역대 왕조가 대부분 채택해 온 역사적 전통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주로 채택된 「聖孔師顏」制는 사실 이때 거의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太宗은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목적에서 貞觀 11年(637)에 가서는 孔子를 「宜父」라 追尊함과 동시에 兗州에 廟堂까지 설치하여 봉안토록 하였으며, 21年(647)에 가서는 左丘(邱)明 등 22인에 대해서도 「自今有事太學, 可與顏子俱配享孔子廟堂」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려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까지 마련해 놓았다.⁶⁷⁾ 이러한 「從祀制」는 清末까지 지속되면서 중국 교육사의 일대 전통이 되어

64) 「舊唐書」卷 189上 「儒學傳」序.

65) 「新唐書」卷 15 「禮樂志」, 「冊府元龜」卷 604 「學校府奏議」.

66) 「唐會要」卷 35 「褒崇先聖」條.

67) 「新唐書」卷 15 「禮樂志」, 「通典」(卷 53 禮典)이나 「舊唐書」(卷24 禮樂志)에서는 종사 대상을 左丘明 이하 22人이라 칭하고 있으나, 「舊唐書」(卷 3 太宗本紀, 189上 儒學傳序)나 「新唐書」(卷 198 儒林傳序)에서는 賈逵를 제외한 21人이라 하고 있다. 이는 高明士씨의 고증을 따랐다. 「唐代的釋奠禮制及其在教育上的意義」, 「大陸雜誌」, 61卷 5期, 1970년 11월, p. 234.

주었다. 그런데 高宗은 永徽 2年(651) 閏9月 「永徽令」을 반포하면서 「周公爲先聖, 黜孔子爲先師, 顏回·左丘明 竝爲從祀」케 하는 이른바 「聖周師孔」制⁶⁸⁾로 개정하면서 顏回·左丘明 등을 종사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러나 6年 뒤 顯慶 2年(657) 7월에 가서는 長孫無忌와 許敬宗 등의 奏議⁶⁹⁾에 따라 다시 貞觀時期에 제정된 「聖孔師顏」制나 「從祀制」를 모두 회복하여 그후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唐代 「先聖先師」制에 대한 논란도 종말을 짓게 되었다.

「從祀制」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玄宗 開元 7年(719)令 (필자주; 여기에 「學令」은 없고 「祀令」만 있다)에 의하면 다시 10哲까지 「列像廟堂」토록 하였는데 단 亨祀하지는 않았다.⁷⁰⁾ 또한 開元 8年(720)에 가서는 國子司業 李元瓘의 건의⁷¹⁾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고 있다.

顏回等十哲, 宜爲坐像, 悉今從祀. 曾參大孝, 德冠同列, 將爲塑像, 坐於十哲之次. 因圖畫七十弟子及二十二賢于廟堂上. 以顏子爲亞聖, 視爲製贊, 書于石, 仍令當朝文士, 分爲之贊, 題其壁焉.⁷²⁾

즉, 顏回 등 10哲을 모두 坐像으로 바꾸어 孔宜父를 從祀토록 함과 동시에 曾參까지 묘당에서 配亨토록 하였다. 아울러 70子 및 22賢에 대해서도 廟壁에 畫像토록 하였다. 단, 70子에 대한 亨祀는 아직 없었고⁷³⁾ 이는 開元 20年(732) 「大唐開元禮」가 완성된 이후에 가서야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 외 顏回를 亞聖으로 추존하기 시작한 것도 開元 8年(720)부터이다. 元 至順年間(1330~1332)에 이르러서는 다시 復聖으로 추존, 孟子를 亞聖으로 삼았다.

한편 開元 27年(739) 8월에 가서는 孔子를 「文宣王」으로 추존하여 「文宣公」이라 嗣하였으며 10哲은 「兗公」, 22賢은 「侯」, 曾參 및 端孫師(子張) 이하 70子는 「伯」로 각각 封하였다.⁷⁴⁾ 이처럼 孔夫子를 王, 그의 제자들을 公·侯·伯으로 삼기 시작한

68) 「通典」卷 53 禮典 「釋奠」·「孔子祠」條.

69) 당시 奏議 내용은 「唐會要」卷 35 「褒崇先聖」條에 실려 있다.

70) 「唐六典」卷 21 「國子監·司業」條注에 「舊令, 唯祀十哲及二十二賢」이라 하였다. 仁井田陞氏は 위 「舊令」을 開元7年の 「祠令」으로 보고 있다. 氏著, 「復舊祠令二十九條」(「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4).

71) 그 내용은 「唐會要」卷 35 「褒崇先聖」條에 상세히 보인다.

72) 「通典」卷 53 禮典, 「舊唐書」卷 24 「禮儀志」.

73) 「文獻通考」卷 43 「學校考」.

74) 「通典」卷 35 禮典 「孔子祠」條, 「舊唐書」卷 24 「禮儀志」.

것은 이때부터다.

통틀어 말해 唐代 석전 대상의 「聖孔師顏」制나 「從祀制」는 太宗 貞觀 2年(628)에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으며 高宗 顯慶 2年(657) 이후 특히 玄宗 開元年間에 이르러서는 그 대상을 孔門이나 儒道를 발양하는데 공이 큰 22賢·10哲·70子 등으로 더욱 증렬해 놓음으로써 정부의 「儒敎主義 敎育」 시책을 뒷받침해 주었다.

2. 釋奠禮制의 確定

모든 祭禮는 그 대상을 중요시하기 마련이다. 먼저 그 대상이 확정되어야만 그에 따른 禮制도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釋奠禮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唐代 「聖孔師顏」制 및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는 太宗 貞觀時期에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으며, 玄宗 開元 20年(732) 「大唐開元禮」 150卷(이하 「開元禮」라 간칭함)이 완성된 이후 완비되었다. 이 禮는 貞觀·顯慶禮의 차이점을 절충해 놓은 것으로 唐代 釋奠禮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고 있다. 오늘날 「貞觀令」이나 「永徽令」 등 태종 및 고종 시기의 학제를 밝혀줄 수 있는 두 개의 令이 모두 망실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 禮의 존재는 실로 진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 禮는 반포되고 난후 후대 모든 儀禮의 준칙이 되어주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제정해 놓은 釋奠禮制 또한 이를 전본으로 삼고 있다.⁷⁵⁾

「開元禮」 가운데 석전례(중앙 및 지방포함)에 관한 것은 卷1 「序例」, 卷52 「皇帝·皇太子視學」, 卷53 「皇太子釋奠于孔宣父」, 卷54 「國子釋奠于孔宣父」, 卷55 「仲春仲秋釋奠于齊太公」, 卷69 「諸州釋奠于孔宣父」, 卷72 「諸縣釋奠于孔宣父」 등에 보인다. 단,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開元 20年(732)까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후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孔宣父」를 「文宣王」으로 존칭한 시기는 開元 27年(739) 이후이므로, 「開元禮」에서는 이전의 존칭대로 「孔宣父」라고만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開元禮」에 규정되어 있는 釋奠禮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75) 彌永貞三, 「古代の釋奠について」(阪本太郎博士古稀紀念會編, 「續日本古代史論集」下卷, 東京, 吉川弘文館, 1972年 7月), p. 382.

A. 時 期

「開元禮」卷1「序例」나 「大唐郊祀錄」卷10「文宣王廟」條에 의하면 唐代 釋奠禮는 크게 「常祀」와 「非常祀」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있다. 常祀는 매년 仲春(2월)·中秋(8월) 上丁日에 중앙은 國子監, 지방은 각 州·縣學의 孔子廟에서 「先聖先師」에 대해 거행하는 祭禮다. 唐代 이러한 규정은 學制와 마찬가지로 직접 隋制를 계승하였다기 보다는 北齊制⁷⁶⁾를 계승하 듯 하다. 또한 중앙(국자감 공자묘)에서 거행하는 제례는 「中祀」, 지방에서 거행하는 제례는 「小祀」에 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⁷⁷⁾

만일 이들 제례가 국가의 大祭와 겹칠 경우, 중앙은 中丁日로 미루어 거행하지만 지방 州·縣學(孔廟)에서는 상관없이 그대로 거행한다. 그런데 중앙이나 지방의 釋奠 常祀 가운데 「四時之祭」에 관한 내용은 「開元禮」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祭 역시 「禮記」文王世子篇의 「凡學春官釋奠於其先師, 秋冬亦如之」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단지, 先師에 대해서만 禮를 행할 뿐 先聖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다. 北齊 이후 석전 상사 가운데 이 祭를 거행했다는 기록은 사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隋代 역시 이를 거행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록이 한 차례 나타나고 있는데 즉, 高祖 武德 2年(619) 6月 國學(國子學을 지칭)에 周公과 孔子廟를 각각 하나씩 건립하도록 하는 조서에 보이는 「四時致祭」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北齊 이후 사료상에 이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거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해 버리기 보다는 기재상의 생략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北齊는 「日出行事(釋奠禮 및 拜孔揖顏을 지칭)而不至者, 記之爲一負。」⁷⁸⁾할 정도로 학례의 실시를 엄정 증시해 왔었고, 隋代에도 北齊때 매년 두차례 실시하던 것보다 증가하여 매년 4차례(2, 5, 8, 11월)나 거행⁷⁹⁾할 정도로 대단히 이를 해왔기 때문이다. 唐代에도 太宗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貞觀 4年(630) 전국의 州·縣 관학에 孔子廟를 모두 설치하여 기일에 맞춰 석전례를 행하

76) 北齊나 隋代 釋奠禮는 「隋書」卷 9 「禮儀志」에 보인다.

77) 「大唐開元禮」卷 1 「序列上」.

78) 「隋書」卷 9 「禮儀志」.

79) 앞의 주와 같음.

도록 하는 등 역대 제왕 못지 않게 그 禮의 실시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北齊 이후 隋·唐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는 석전례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교육적 의의를 발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⁸⁰⁾ 釋奠禮를 학교 내에서 거행하는 제사로 규정해 놓은 자체가 교육적 의의를 내존하고 있는 것이다. 鄭玄도 「禮記」에 명시되어 있는 釋奠禮의 실시 목적을 「尊師重道」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禮記」에도 명시되어 있는 禮를 역대 군주들이 발전 시켜 나가면서 이것만 소홀히해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非常祀는 皇帝 및 皇太子의 視學, 皇帝의 釋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도 「開元禮」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단, 魏·晉時代に 幼帝나 皇太子의 「通一經」 및 「元服(성년식에 해당)」을 행할때 석전례를 거행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다.⁸¹⁾

B. 主 持 者

「主持者」란 祀典의 집행자 즉, 初獻官을 두고 하는 말이다. 釋奠 常祀의 경우 중앙의 국자감에서는 國子祭主가 이를 맡고 지방 州·縣學의 경우는 刺史나 縣令이 맡는다. 非常祀의 황제 시학이나 황태자의 석전은 직접 황제나 황태자가 맡지만 「開元禮」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황제나 황태자가 초헌관이 되었을때 國子祭主는 亞獻官을, 司業은 終獻官을 각각 맡았을 것이다. 국자감에서 거행하는 석전례는 국자제주가 초헌관 사업은 아헌관 박사는 종헌관을 맡지만,⁸²⁾ 지방 州學의 경우 刺史가 초헌관, 主佐는 아헌관, 博士는 종헌관을 맡는다. 縣學의 경우는 縣令, 丞, 主簿나 尉가 각각 초헌 아헌 종헌관을 맡는다.⁸³⁾

국자감에서 거행하는 석전례의 祝文은 「皇帝謹遣祭主某」⁸⁴⁾라 하여 國子祭主 某某가 황제를 대신하여 의례를 집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皇帝謹

80) 高明士, 앞의 「唐代的釋奠禮制及其在教育上的意義」, p. 232.

81) 彌永貞三, 앞의 글, p. 389.

82) 「唐六典」卷 21 「國子監」條.

83) 「唐會要」卷 35 「釋奠」條.

84) 「大唐開元禮」卷 54 「國子釋奠于孔宣父」條.

遣」이란 말은 쓰지 않고 직접 刺史(혹은 縣令)의 관위나 성명을 기입하여 고평하도록 하였다. 다시말해 지방 州·縣學에서 거행하는 釋奠禮는 지방 장관이 알아서 행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開元禮」의 이와 같은 규정은 貞觀 21年(647) 許敬宗 등의 건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唐會要」卷35「釋奠」條에 그 상세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今後國學釋奠，令國子祭酒爲初獻，祝詞稱「皇帝謹遣」，仍令司業爲亞獻，博士爲終獻。其諸州，刺史爲初獻，上佐爲亞獻，博士爲終獻。縣學，令爲初獻，丞爲亞獻，博士既無品秩，請主簿通爲終獻。若缺，竝以次差攝

許氏 등이 이러한 건의를 하기 이전에 중앙 및 지방 관학에서 거행하는 釋奠禮는 「(國子監) 儒官自爲祭主，直云博士姓名，昭告於先聖。又州縣釋奠，亦博士爲主」⁸⁵⁾처럼 주로 해당 학교의 박사가 알아서 주관였다. 그러던 것을 太宗 貞觀 21年(647) 이후에는 중앙 국자감에서 거행하는 禮는 국자제주가, 지방 주·현학에서 거행하는 것은 지사나 현령이 각각 주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唐代 釋奠禮制의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때부터 황제가 국학에 친림하여 석전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두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 문헌상에 보이는 석전례 主持者는 오직 황태자 뿐이다.

C. 講 經

「開元禮」에 규정되어 있는 皇帝 및 皇太子의 視學, 그리고 皇太子 釋奠禮 가운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饋亨(제사)를 거행하고 난후 곧바로 學官의 講經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장소는 학당이며 내용은 讀經 釋義 論義를 포함하고 있다. 唐代에는 제사부터 거행한후 이를 행했지만, 이전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講經부터 행한 후 제사·연회 순으로 진행하였다.⁸⁶⁾ 단, 唐代에는 석전후 연회를 거행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85) 「通典」卷 54 「國子釋奠于孔宣父」條.

86) 魏晉, 南北朝時代의 釋奠禮에 관해서는 앞의 彌永貞三氏 글에 상세하다. pp. 367~381.

講經은 執經 執讀 侍講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인원은 알 수 없다. 執經은 釋義를, 執讀은 讀經, 侍講은 論難(質疑)를 각각 맡는다. 여기에 사용되는 교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儒敎主義 敎育을 발양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孝經」이나 5經을 범주로 하였을 것 같다.

3. 釋奠禮의 敎育的 意義

「禮記」文王世子篇에서 말한 「天子는 처음 학교를 건립할 때 반드시 先聖先師에 대해 釋奠禮를 거행해야 하고 四時에는 學官이 先師에 대해 釋奠해야 한다」는 것이 석전례 실시의 기원이다. 鄭玄도 그 목적은 「尊師重道」에 있다고 했듯이 이 禮는 처음부터 敎育적 의의를 발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한 것이다. 또한 이 가운데에는 학교 敎育의 理想까지 내포하고 있다. 단, 漢·魏까지만 해도 그 禮는 周의 제도를 모방하여 학교가 아닌 「僻雍」에서 다른 禮와 함께 거행하였고, 더구나 당시의 학교 敎育은 종교 및 의례를 관장하는 「太常寺」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敎育의 의의 보다는 추상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였을 것이다.

西晉에 이르러 그 禮가 학교내에서 거행하는 제사로 규정되면서 이가 지니는 敎育적 의의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⁸⁷⁾ 그런데 석전례가 지니는 敎育적 의의는 먼저 학제가 완비되고 정상적인 학교 敎育이 진행되어야만 그 실질적 공능도 발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西晉 이후 그 禮가 학교내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어도 唐(7, 8세기) 이전의 학교 敎育은 아직 발전 단계에 불과 하였기 때문에 그 敎育적 의의를 정상적으로 발휘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唐代 釋奠禮가 지니는 가장 큰 敎育적 의의는 학제가 완비되고 학교 敎育이 정상 실시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敎育理想」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높고 요원한 敎育 목표를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은 唐代 완비된 학교 제도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唐은 貞觀 및 顯慶 이후 유교를 발양하는데 공이 큰 유가 인물들로 석전 및 종사 대상을 규정하여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敎育과 「敎

87) 高明士, 앞의 글, p. 158.

育理想」을 합치시켜 놓았다. 그 학교 교육이란 唐代에 이르러 완성된 儒敎主義 敎育을 지칭하는 것이며 교육 이상이란 석전례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 즉, 「希賢希聖」으로부터 「成賢成聖」에 이르는 방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⁸⁸⁾ 학생들은 평상시 유가 서적을 통해 先聖(孔子) 先師(顏回) 및 先儒(10哲, 22賢, 70子)들의 학업과 인품을 배우게 되고 또한 석전례에 참가하여 그들이 숭상하는 성현들의 형상을 직접 우러러보는 가운데 「耳濡目染」하여 자신들로 열심히 성현들의 학행을 본받으려 한다면 언젠가는 성현들과 함께 묘당에 同列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석전례가 지니는 가장 큰 교육적 의의요, 나아가서는 중국 학교 교육이 지니는 최고의 교육 이상이라 할 수 있다.

◎ 結 論

중국의 전통 학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吏材를 양성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官吏養成所」나 다름없다. 그래서 달리 「官學」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이들을 기반으로 왕권강화는 물론 제국 통치의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군주의 속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교육의 흥망성쇠도 정치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한계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제 왕권의 확립, 관료제의 발달, 유교주의 정치 이념의 구현, 그리고 군주 개인의 문교 사업에 대한 열정이 지대했을때 그 교육은 흥성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유명 무실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교육의 중심이 私學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점이 중국 학교 교육이 지니는 선천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7·8세기 安史之亂 이전에 전통 중국의 학교 제도(학제·학례 포함)가 완비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중앙 집권적 전제 왕권 확립에 따른 정치 안정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이다.

華夏民族에 의한 진정한 통일 왕조라 할 수 있는 唐 전기에, 中國史上 최대의 盛世라 일컫는 「貞觀之治」와 「開元之治」의 국면을 창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태종과 현종 자신이 학교 교육 발전에 쏟아 부은 정열이 남다른 바도 있었겠지만, 이를 통

88) 高明士, 「成聖敎育」論, 앞의 책, pp. 240~245 참조.

해 양성된 관리들이 정부의 통치 방략을 충실히 이행해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정치 안정과 학교 교육 발전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완비된 7·8세기 唐의 학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교육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이 종교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정치권에 더욱 강하게 예속되고 있다. 隋文帝 開皇 13年(593) 「國子學」制가 출현하면서 학교 교육은 처음으로 종교 및 의례를 관장하는 「太常寺」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國子祭酒」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교육 행정 체제를 수립해 놓았다. 이러한 체제는 唐代 「國子監」制가 출현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다시 尚書省 禮部에 귀속되어 버려 독립에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玄宗 開元 24年(736) 이후에는 관리 선발의 주관마저 禮部로 귀속되어 버림으로써 학교 교육의 선천적 결합인 정치권에 대한 예속은 더욱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安史之亂」 이후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해이해져 버리고 정국이 동탕지경에 빠지는 등 정치 부재 현상이 노출 되었을 때 이에 종속된 학교 교육도 더이상의 발전없이 「私家講學」의 私學에 떠밀려 쇠퇴하고 말던 것은 학교 교육 발전 기인 唐 전기, 특히 정관·개원년간에 끝내 정치권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둘째, 專業 敎育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학교 교육은 처음부터 중앙·지방을 막론하 경학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그런데 隋文帝 開皇 國子寺(學)制가 출현하면서부터는 經學과 專業 즉, 유학 교육과 기술학 교육을 겸비하는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당대 국자감 제도에 이르러 경학 교육과 전업 교육 학관을 3:3 동등한 비율로 배정해 놓음으로써 더욱 확연해졌다. 宋 이후 중국의 학교 교육이나 주변 지역의 학교 교육에서도 이처럼 최고 교육 기구내에 경학 교육과 전업 교육을 겸비해 놓고 있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입학상의 階級制와 定員制를 들 수 있다. 唐代 각 學館의 입학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祖父의 資蔭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되었다. 더구나 그 입학 정원도 학관의 성질에 따라 제한하였다. 이러한 특징 역시 당대 국자감제의 출현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는데 결과 중앙 학교와 지방 학교 학관과 학관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교류가 단절되어 학문 수준의 향상에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玄宗은 開元 21年(733) 5월 서민 자제와 지방의 우수 학생, 그리고 중앙 관학생들의 면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지방 관학생들의 중앙 四門學 俊士生으로의 입학을 배려해 주었고 나아가 사문학생은 태학, 태학생은 국자학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⁸⁹⁾ 당시 이러한 조치가 중앙 관학의 평민화 및 학생들의 면학 풍토 조성에 얼마만한 실효를 거두었는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개원 말기 현종의 정치 나태와 곧이어 일어난 安史之亂 등으로 정치 환경이 문란해져 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때부터 경학 교육 만큼은 중앙 사문학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 학교간에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점 역시 당대 교육사의 의의로 평가 할 수 있다.

셋째, 「廟學制」의 보편적 실시를 들 수 있다. 「廟學制」란 학교내에 聖廟(孔子廟)를 건립하고 일정한 기일에 맞추어 「先聖先師」에 대해 學禮(釋奠禮)를 거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⁹⁰⁾ 그래서 학교는 교육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신성시 되었다. 이는 漢 이래 중국의 학교 제도사가 추구해 온 교육 장소 신성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내에 공자묘를 건립하기 시작한 것은 東晉 孝武帝 太元 3年(385)부터다. 이때 중앙 국자학에 먼저 설치하였고 北齊 文宣帝 天保 元年(550)에 이르러서는 지방 관학에까지 설치하였다. 그후 唐代에 이르러 太宗은 貞觀 4年(630) 전국의 州·縣學에까지 모두 孔廟를 건립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림으로써⁹¹⁾ 학교 공간의 신성화 노력은 지방 학교에까지 보편화 되었다. 더구나 학교내 孔廟에서는 「先聖先師」 및 10哲·22賢·72弟子像 등을 봉안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釋奠禮를 거행하고 이 禮를 거행할때 學官은 물론 학생들까지 참여케 함으로써 정부에서 추구하는 儒敎主義 敎育 理想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즉, 학생들은 평상시 儒家 書籍를 탐독하는 가운데 先進 儒家들의 학행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존송하는 先儒들의 형상 또한 廟堂에 列像해 놓고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先儒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본받게 된다면 언젠가

89) 「唐會要」卷 35 「學校」條. 그런데 「新唐書」(卷44 選舉志)나 「文獻通考」(卷46 學校考 7 「郡國鄉黨之學」條)에서는 이를 開元 7年の 조서로 보고 있다.

90) 高明士, 앞의 책, p.188.

91) 「新唐書」卷 15 「禮樂志」.

는 자신도 廟堂에서 성현들과 함께 同列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석전제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며, 묘학제의 실시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 학교 교육의 가장 큰 理想이다.

결국, 7·8세기 唐의 학교 제도는 「儒敎主義 敎育」이란 대명제에 입각하여 學制와 學禮를 결부 시킴으로써 당시 현실에 걸맞는 인재를 훌륭히 양성해 내고 있었다.